유체동산인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17. 2017나1283]



【전문】

【원고, 항소인】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회생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164 판결

【변론종결】2017. 12. 20.

【주문】

1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신거래기본약관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 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일반리스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 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원고(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 제5조(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계약서에 따라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 제6조(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용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을 해지일로 합니다.
-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호 생략).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나. 보광의료재단의 대표자 이사인 ○○○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주었다.
-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가 개시되었고, 보광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015. 6.부터 매월 20일에 각 20,872,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 보광의료재단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6,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6. 19.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2015. 6. 19. 기준 여신잔액 6억 8,000만 원, 규정손실금 6억 9,360만 원)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마. 춘천지방법원은 2015. 7. 1. 15:00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8. 19. 송달되었다.
-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
 - ?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 리스물건(의료장비)의 당사 회수 예정이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및 사용금지 가처분 될수 있음을 안내드린다.
 - 계약 해지 후 귀사가 무단으로 당사 리스물건의 사용 등의 행위로 당사가 입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다.
 - 또한 당사 회수의 불인정 등의 사유로 회수 및 매각절차에 있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손해 및 법적 비용 등 당사의 손해금은 귀사로 청구될 수 있다.
- [아래 명세]실행일자리스물건사유2015. 5. 29.이 사건 기계급격한 신용변동, 연체 등(기준일: 2015. 8. 18.)?취득원가연체 금액최장연체일 수매월 30일 매월 리스료 도래하며, 연체금액은 연 25%로 일할 가산된다.

680,000,000원42,386,519원57일?

-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2015. 8. 31. 춘천지방법원에 원인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리스이용대금 , 내용을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5. 6. 30.까지의 리스료 및 연체이자 25%의 비율에 의한 돈, 회생담보권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는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다.
- 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8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552,216,66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27,783,333원을 부인하였다.
- 자. 피고는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6. 13. 보 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 위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에는 원고의 확정된 회생담보권 552,216,667원에 관해 70%에 해당하는 386,551,667원을 자본 금으로 출연(다만 원고가 자본금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65,665,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차. 원고는 2016. 6. 21. "보광의료재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거의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 기해 환취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회생담보권임을 확정한다.
- "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2016회확31,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하였다.
- 카.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2017. 11. 22.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금액(552,216,667원) 이외에 추가로 127,783,333원임을 확정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신거래기본약관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 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일반리스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 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원고(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 제5조(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계약서에 따라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 제6조(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용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을 해지일로 합니다.
-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호 생략).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나. 보광의료재단의 대표자 이사인 ○○○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주었다.
-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가 개시되었고, 보광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015. 6.부터 매월 20일에 각 20,872,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 보광의료재단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6,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6. 19.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2015. 6. 19. 기준 여신잔액 6억 8,000만 원, 규정손실금 6억 9,360만 원)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
 -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마. 춘천지방법원은 2015. 7. 1. 15:00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8. 19. 송달되었다.
-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
 - ?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 리스물건(의료장비)의 당사 회수 예정이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및 사용금지 가처분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
 - 계약 해지 후 귀사가 무단으로 당사 리스물건의 사용 등의 행위로 당사가 입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다.
 - 또한 당사 회수의 불인정 등의 사유로 회수 및 매각절차에 있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손해 및 법적 비용 등 당사의 손해금은 귀사로 청구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명세]실행일자리스물건사유2015. 5. 29.이 사건 기계급격한 신용변동, 연체 등(기준일: 2015. 8. 18.)?취득원가연체 금액최장연체일 수매월 30일 매월 리스료 도래하며, 연체금액은 연 25%로 일할 가산된다.

680,000,000원42,386,519원57일?

-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2015. 8. 31. 춘천지방법원에 원인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리스이용대금 , 내용을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5. 6. 30.까지의 리스료 및 연체이자 25%의 비율에 의한 돈, 회생담보권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는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다.
- 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8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552,216,66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27,783,333원을 부인하였다.
- 자. 피고는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6. 13. 보 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 위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에는 원고의 확정된 회생담보권 552,216,667원에 관해 70%에 해당하는 386,551,667원을 자본 금으로 출연(다만 원고가 자본금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65,665,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차. 원고는 2016. 6. 21. "보광의료재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거의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 기해 환취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회생담보권임을 확정한다.
- "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2016회확31,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하였다.
- 카.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2017. 11. 22.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금액(552,216,667원) 이외에 추가로 127,783,333원임을 확정한다.
 -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